#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4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주호영·고동진·강대식

권영세 · 서명옥 · 조은희

박상웅 • 박준태 • 김장겸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의 소지·관리·제공 등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4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규정된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
다.

-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적용한다. 단,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

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6의3. -----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신 설> 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ㅣ 제2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7. · 8. (생략)

③ (생략)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제40조(제적) ①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1. ~ 3. (생략)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8조제 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 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 임처분을 받은 날

- 7. · 8.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4.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생략)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스토킹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판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스토킹범</u>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
1항에 규정된 죄
다.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